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38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8년 2월 6일

라. 회부일자 : 2018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3.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나.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규정의 '표시형식'개선

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조례·규칙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 공통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일괄정비를 통해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

- 지방자치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수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이하 “시”)에는 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약 600여건의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하지만,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에 따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사항을 일괄해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실제로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서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거나,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수 차례 시행하고 있음.

〈일괄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개정사항		개 정 내 용
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규정 통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미불→미지급, 불입→납입, 지참→지각, 부락→마을 등

-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난 2017년 10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개별 조례별로 각기 상이한 규정으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음.

- 이 밖에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포함한 65건의 조례를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함¹⁾.
-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 처리는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칫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법제처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개별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의안심사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비교적 사소한 법령개정사항 등으로 그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빈도도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함.

1) 현재 시의회에는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2017.9.27.)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포함한 5건의 조례 개정안에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